#### 샌버나디노 시 수도 서비스부

1350 S "E" St. San Bernardino, California 92408

# 수도 서비스 규정 제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본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는 체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지를 피하기 위한 선택권을 논의하기 위하여 샌버니디노 수도 서비스부의 전화번호 (909) 384-509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로 수도 서비스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및 중국어(표준어)

## A. 서비스 취득(상하수도):

- 1. 규정 제 5조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소비자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사십 달러(\$40.00)의 구좌 개설비가 부과됩니다.
- 2. 일정 영업일 수령한 모든 신청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결될 것입니다.
- 3. 영업시간 이후 신청한 당일 서비스 연결은 백 오십 달러(\$15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는 요청 시 해야 합니다.
  - 만약 현장 직원 판단 하에 직원들이 안전하게 수도연결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반환될 것입니다.
- 4. 수도 서비스 신청은 본 규정의 제 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크레딧 및 보증금의 대상이 됩니다.

## B. 소비자의 신청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 1.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을 신청하면 무료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신청을 받으면 수도 서비스부는 최종 검침을 실시하고 영업일 하루 이내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 3. 비상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도 서비부는 입주인의 내부 배관에 부과하지 않고 임시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수리 완료 통지를 받으면 수도 서비스부는 수수료 없이 수도 서비스를 복구할 것입니다.

수도 서비스 규정 제 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6쪽 중 2쪽

#### C. 서비스 중단\_기타:

- 1. 수도 서비스부는 다양한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a. 수도 서비스 전환 및 절도
  - b.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c. 연체된 수도 요금 미납
  - d. 수도 서비스부의 합리적 접근 거부
  - e. 수도 서비스부의 허가 없이 사용
  - f. 위험하거나 불법적 장비
  - g.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용
  - h. 수도 서비스부에 통보 없이 건물을 비움 또는
  - i. 법률 위반
- 2. 수도 서비스부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 a.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휴일 바로 전 마지막 영업일
  - b. 만약 소비자와 수도 서비스부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수도 서비스부가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c. 수도 서비스부가 맞지 않는 청구서를 보내고 나서 수도 서비스부가 이를 인정한 경우.
  - d. 서비스 중단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 i.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면허가 있는 주치의가 작성한 인증서
    - ii. 구좌의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월부상환 계약

수도 서비스 규정 제 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6쪽 중 3쪽

#### 3. 서면 중단 통지

- a. 수도 서비스부는 체불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15일 이전에 중단 통지서를 우송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가 우체국을 통해 반환되는 경우, 수도 서비스부는 소비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 모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b. 만약 수도 서비스부가 전화로 소비자와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서면 통지서가 해당 건물에 게시될 것입니다.
- c. 모든 중단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할 것입니다.
  - i. 소비자 이름
  - ii. 서비스 주소
  - iii. 체납된 액수
  - iv. 수도 중단을 피하기 위한 지불이나 지불 계획이 요구되는 마감 날짜
  - v. 지불조정 계획을 위한 절차 설명
  - vi. 청구액의 분쟁이나 항소를 위한 절차 설명
  - vii. 수도 서비스부의 중단 및 복구 서비스 방침(본 방침)을 받아 볼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링크

### D. 체납된 청구액에 관한 대안지불 계획

- 1. 정상적인 지불 기간 이내에 수도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소비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대안지불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수도 서비스 중단이 입주인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치의가 인증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주치의의 인증서는 반드시 서명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 규정 제 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6쪽 중 4쪽

- b. 소비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가구 내에 공공 보조금을 받는 일원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또는 해당 가구가 연방 빈곤 수준의 200 퍼센트 이하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c. 소비자가 대안지불 조정을 체결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 2. 다음 청구 기간까지 지불을 연장하는 지불조정은 월부상환 지불이라고 간주되며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기록 상의 소비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 a. 지불계획은 미지불된 청구액을 수도 서비스부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월부로 지불하는 것이고 원래의 청구서 날짜로부터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부상환은 소비자의 정기 청구서와 합산되며 만기일이 있습니다.
  - b. 소비자는 지불계획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체납 이후의 후속적 청구 금액은 청구 기간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c. 소비자는 체불된 요금을 지불계획에 따라 지불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속적 월부상환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 3. 지불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면 중단 통지서 발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단 통지서는 수도 서비스 중단으로부터 영업일 5일 전이나 그이전에 해당 건물의 문에 다는 형태로 게시될 것입니다.

#### E. 수도 서비스 복구

1. 상기 C. 1조 하에 있는 이유로 인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된 소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 중 있었던 각 사건에 대해 규정 제 8조에 열거한 대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규정 제 6조에 열거한 대로 체납된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비자는 모든 청구액,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도를 복구하거나 조작으로 인한 훼손의 경우 소비자가 수도 서비스부의 자산에 대한 모든 손해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복구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는 모든 피해액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도 서비스 규정 제 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6쪽 중 5쪽

- a. 집 주인이나 허가받은 관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좌의 체납으로 인하여 수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건물의 합법적 세입자는 구좌를 개설하여 미래의 청구서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만약 보증금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도 서비스부에 제공한다면 개인적으로 또는 같은 건물의 입주자들과 함께 구좌를 개설하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청구액은 현재 구좌 소유주의 책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2. 내용영업시간 이후 영업일 당일 수도서비스 복구에는 백 오십 달러(\$15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현장 직원 판단 하에 직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 연결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반환될 것입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 추가내용:
  - a. 허가 없는 수도 서비스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된 잠금 장치에 손상, 분실, 부정 변경이 발견될 경우 \$200.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훼손된 장비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은 \$200.00의 수수료에 추가될 것이며 수도 서비스 복구 전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 b. 미터를 통과하지 않은 수도관이나 그 이외에 불법적으로 수도에 연결하거나 수도 서비스부의 허가 없이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불법적이거나 허가 받지 않은 수도 사용은 미터 크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2인치 또는 그 이하의 미터 크기는 벌금이 \$250.00이며 2인치 이상의 미터 크기에는 \$500.00이 부과됩니다. 해당 벌금은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한 수도요금 추정액과 훼손된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현재 청구액에 추가로 부과되며 수도 서비스 복구 전에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 F. 청구 금액에 대한 분쟁

1. 귀하의 청구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소비자 서비스 부서에 청구서 수령 10일 이내에 연락하십시오. 수도 서비스 규정 제 10조 수도 서비스 신청, 중단 및 복구

### 6쪽 중6쪽

- a. 귀하는 일반 영업시간 내에 소비자 부서에 (909) 384-5095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귀하의 청구서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b. 만약 해당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관과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그럼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관리부 검토에 대한 신청을 행정 서비스 매니저(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P.O. Box 710, San Bernardino, CA 92402 주소로 우송하여 할 수 있습니다.
- d. 해당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수도 서비스 중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 귀하의 검토 신청 수령 후 14일 이내에 수도 서비스부가 최종 해결책과 그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 G. 하수구 측면 캡핑

- 총괄 매니저는 수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면 하수구 캡핑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하수구 캡핑 허가가 발급되면, SBMWD 수집 분과는 캡핑 일정을 수립하고 하수구 측면 캡을 씌울 것입니다. 허가서의 발급되면 SBMWD 수집 부서와 계약자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 당사자의 사유 재산에 진입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3. 캡핑 작업이 완료되면, SBMC 섹션 13.08.105에 명시된 하수구 캡핑 영수증 번호를 개발 서비스 부서에 발급해야 합니다.

수도위원회 승인: 2021년 7월 27일

유효 날짜: 2021년 10월 15일

대체 날짜: 2020년 4월 1일